

대전 한신더휴 리저브 무순위 2차 입주자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요정보

(분양문의) 02-3393-3320

주택유형	규제지역여부	무순위(사후) 자격요건	
민영	비규제지역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재당첨제한	전매제한	거주의무기간	분양가상한제
없음	최초 당첨자발표일(2021.03.24.)로부터 6개월	없음	미적용

구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무순위(사후) 접수일	당첨자발표일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정	21.02.25.(목)	26.02.06.(금)	26.02.11.(수)	26.02.19.(목)	26.02.20.(금)	26.02.27.(금)

1

공통 유의사항

◆ 유의사항

- 본 아파트는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로 현재 건본주택 운영 및 사이버 모델하우스 운영이 종료되었으며, 반드시 현장 주변 및 단지여건 등을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 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서류는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 추가 안내할 예정입니다.
- 당첨자(예비 입주자 포함) 자격확인 서류 및 공급계약 체결일정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본 아파트는 준공 이후 분양하는 무순위 공급 아파트로 마이너스옵션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미 시공된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에 대하여 취소 및 변경 등을 요구할 수 없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 이후 당첨자에 한하여 개별 통보 후 당첨된 동호수의 세대 방문을 진행할 예정이며, 세대 방문시 현황을 충분히 확인하시고 계약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안내사항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체는 대출기관 알선을 하지 않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본인의 대출실행 가능여부, 대출한도, 자금조달계획 등을 면밀히 고려하신 후 청약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2021.02.25.)를 준용하오니 해당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화상담(02-3393-3320)을 실시하오니, 간혹 폭주하는 전화상담 신청으로 인해 다소 대기 시간이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홈 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2025.10.3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무순위(사후) 청약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청약신청이 불가합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청약신청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으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국내거주로 불인정되어 청약신청 불가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홈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으로만 신청이 가능(현장접수 불가)하며,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방식만 가능합니다. 반드시 청약 이전에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 또는 금융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유형	공동 인증서	금융 인증서	네이버 인증서	KB국민 인증서	토스 인증서	신한 인증서	카카오 인증서
APT잔여세대 (무순위)	○				X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음이 확인될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2 단지 유의사항

- 본 주택의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6.02.06.(금)**이며(청약자격 요건 중 나이, 거주요건 등의 판단기준일), 주택관리번호는 **2026910034**입니다.
- 본 주택은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을 대상으로 공급합니다(외국인 청약불가).
-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2.25.(목)**이며 최초 주택관리번호는 **2021000066**이므로,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주택공급가격 및 단지여건, 유의사항 등의 세부 내용은 반드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을 통해 확인하신 후 청약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금회 공급 주택형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1순위 및 2순위 청약 마감된 주택형으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추가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미계약 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서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하고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향후 청약 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일정을 안내해 드립니다.

구 분	무순위(사후) 접수	당첨자발표	서류접수	계약체결
일 정	26.02.11.(수)	26.02.19.(목)	26.02.20.(금)	26.02.27.(금)
방 법	■ (PC·모바일) 청약홈(09:00 ~ 17:30) ■ 현장접수 불가	■ (PC·모바일) 청약홈	■ 한신공영(주) 본점사무실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 한신공영빌딩)	

※ 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가능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 불가

※ 모바일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모바일 청약 시,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기 바라며,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청약 신청은 1인 1건만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합니다.

■ 2018.12.11.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제2조제4호에 의거 '세대'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부동산 거래신고 신고 의무화로 **대전광역시 중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의 당첨자발표일(2021.03.24.)로부터 6개월간 적용되어 현재 전매제한기간이 도과하였습니다.

- 공급위치 : 대전광역시 중구 선화동 908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5층, 지상 49층 3개동 총 418세대 중 잔여 2세대
- 입주시기 : 사용검사 완료된 아파트로 잔금 및 납부 의무가 있는 모든 금액을 납부 후 입주가능
- 공급대상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잔여세대수	잔여세대 동·호 내역	
					동	호
2026910034	01	084.9648A	84A	2	1101	903, 1403

■ 공급금액 표 (단위 : 원)

약식표기	동호수	층구분	아파트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대지비	건축비	소계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84A	1101-903	9층	125,232,015	324,767,985	450,000,000	45,000,000	405,000,000
	1101-1403	14층	125,232,015	334,767,985	460,000,000	46,000,000	414,000,000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단위 : 원)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침실1,2 가변형 벽체 선택사항	안방 드레스룸 형태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101-903	발코니확장	22,000,000	2,200,000	19,800,000	기본형(설치)	파우더+드레스룸 통합
1101-1403	발코니확장	22,000,000	2,200,000	19,800,000	기본형(설치)	파우더+드레스룸 분리

■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단위 : 원)

동호수	구분	공급금액	계약금(10%)	잔금(90%)
			계약시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1101-903	시스템에어컨(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000,000	700,000	6,300,000
	펜트리&알파룸(홈오피스형, 책상+책장+AL도어)	800,000	80,000	720,000
	안방 불박이장	3,000,000	300,000	2,700,000
	침실1 불박이장	950,000	95,000	855,000
	현관 중문(3연동)	1,300,000	130,000	1,17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350,000	35,000	315,000
	포세린타일	1,950,000	195,000	1,755,000
	빌트인 냉장고	2,300,000	230,000	2,07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키큰장 포함)	1,700,000	170,000	1,530,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900,000	90,000	810,000
	빌트인 전기오븐	350,000	35,000	315,000
	하이브리드 쿡탑	750,000	75,000	675,000
1101-1403	시스템에어컨(5개소, 거실,주방,안방,침실1,침실2)	7,000,000	700,000	6,300,000
	우물천정 간접조명	350,000	35,000	315,000
	포세린타일	1,950,000	195,000	1,755,000
	빌트인 식기세척기	900,000	90,000	810,000
	빌트인 전기오븐	350,000	35,000	315,000

※ 분양금액은 계약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본 계약에 대해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아니하며, 연체료는 공급계약서에 명시된 이율이 적용됩니다.

※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의 경우 기존 계약을 승계하는 조건으로 변경 및 취소가 불가합니다.(승계 거부 시 계약불가)

※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및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은 공급계약금액을 납부하시고, 별도로 납부하셔야 합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 소유권이전등기비용, 취득세, 인지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잔금 약정일 다음날로부터 잔금 납부와 관계없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합니다.(단, 잔금약정일 이전 입주하는 경우 열쇠수령일로부터 계약자 부담)

■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공급대금	농협은행	301-0286-0314-31	인본개발주식회사
발코니 확장공사 금액	농협은행	301-0286-0331-11	인본개발주식회사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 금액	국민은행	671001-04-047497	한신공영(주)

※ 금융거래 투명성을 위하여 온라인 수납만을 인정하며, 접수처에서 일체의 현금 또는 수표 수납은 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며 착오 납입에 따른 문제 발생시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통장 입금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예시: 1101동 903호 계약자 → '11010903홍길동')

※ 타인 명의 등 납부 주체가 당점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할 경우는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납부기일 및 납부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제출서류 확인결과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합니다.

■ 인지세 납부 안내

※ 본 아파트 공급계약서는 「인지세법」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에 해당되며, 계약서 또한 「인지세법」상 '도급문서'로서 인지세 납부대상으로 「인지세법」제1조에 의거 인지세 납부 대상이 되며, 공급계약 체결시 사업주체와 분양계약자는 과세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균등납부 하기로 합니다. 또한, 분양계약자가 분담부분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거나 과소 납부, 인지 분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분양계약자에게 있습니다. 정부수입인지는 취급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구매하거나, 전자수입인지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발급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소비과(☎126)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12.31. 개정된 「인지세법」제8조제3항에 따라 공급계약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세액 : 부동산 거래계약서의 실제 거래가격(분양대금 및 별도품목)을 기재금액으로 하여 해당되는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거래금액	1천만원 초과 ~ 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0억원 초과
납부세액	2만원	4만원	7만원	15만원	35만원

- 납부방법 : 정부수입인지는 전자수입인지 사이트(<https://www.e-revenuestamp.or.kr>)에서 구매 후 출력하여 계약서에 첨부하거나, 우체국 은행에서 구매가 가능합니다.

- 정부수입인지는 분양권 매매 당사자뿐만 아니라 물건을 중개하는 공인중개사나 등기 대행하는 법무사도 구매하여 첨부할 수 있습니다.

- 인지세 납부등과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hometax.go.kr)자료실(인지세 자주 묻는 상담사례)에서 확인하시거나 세무서(소비담당)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내용
대상자	■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신청가능 ■ 외국인인 주민등록법상 세대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필요로 하는 무순위 청약이 불가합니다.
청약신청 제한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청약 신청 불가 - 동 주택에 당첨되어 계약을 체결한 분 또는 예비입주자 중 추가입주자로 선정된 분 - 동 주택에 당첨되었으나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분 - 부적격 당첨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 공급질서교란자로서 그 제한기간 중에 있는 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방법	■ 한국부동산원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주택형별 무작위 추첨으로 무순위(사후) 당첨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 ■ 주택형별 무순위(사후) 공급세대수의 900%까지 무작위 추첨으로 예비입주자 선정 및 예비순번 배정

■ 청약신청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무순위 → 주택명 및 주택형 선택 → 유의사항 및 청약자격 확인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완료
- 청약신청 시간 : 09:00~17:30
- * 17:30까지 청약신청 완료해야 하며, 청약 신청 진행 중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신청 취소 방법 및 절차(PC·모바일)

- 경로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 청약취소 → 취소하고자 하는 신청내역 선택 → 인증서를 통한 전자서명 → 청약신청 취소 완료
- 청약신청 취소 가능시간 : 청약신청일 당일 09:00~17:30
- * 청약신청일 당일 17:30까지 청약신청 취소 완료해야 하며, 청약신청일 당일 17:30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청약신청 취소가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서비스

청약홈	- 조회방법 : 청약홈 접속 → 인증서 로그인 → 청약당첨조회 - 조회기간 : 2026.02.19.(목) ~ 2026.02.28.(토) (10일간) - 당첨 결과는 착오 안내 가능성이 있으므로 유선 및 서면 등 별도 통지하지 않습니다.
문자	- 제공일시 : 2026.02.19.(목)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제공대상 : 청약 신청 시 휴대폰 번호를 등록하고 SMS 수신에 동의한 당첨(예비)자 * 당첨자 발표 안내 문자에는 스미싱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별도의 링크(URL)를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링크(URL) 또는 전화 번호는 절대 누르지 않는 등 유사한 스미싱 문자에 대해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통신 환경 등에 따라 문자가 정상적으로 수신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반드시 청약홈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제출 서류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필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 여권의 발급일이 2020년 12월 21일 이후인 경우 “여권 정보증명서” 추가 필요 ※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및 국내거주 사실증명서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용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발급분은 절대 불가합니다.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대리인 접수 및 계약 불가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인장 대조 확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 서명
	○		주민등록표등본 (전체포함)	본인	·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및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 및 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등 “전체포함”으로 발급
		○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상세발급 요망)
	○		주민등록초본(상세)	본인	· 주민등록번호, 주소변동사항 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의 관계 포함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상세’로 발급(배우자 및 자녀, 직계존속 등 공급신청자와의 관계)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세대원	·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주민등록번호 전체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로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개명한자의 경우 개명 이전 성명의 발급 본 추가 제출 필요(기록대조일 : 본인 생년월일 ~ 개명 이전 일로 설정)
		○		본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공급신청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생업종사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 관련 서류 등 (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근로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제출 : ①비자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유학,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하지 않으며, 생업 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도 인정 안됨
		○	사업주체 추가 요청서류	본인	· 사업주체에서 자격검증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
대리인	○		위임장	청약자	· 접수처 내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인감증명서	청약자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외국국적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대리인 인감도장	대리인	· 서명 또는 날인
부적격		○	해당주택에대한소명자료	해당주택	· 건축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통보를 받은자		○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등
		○		· 소형, 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주택공시가격증명원 등)
		○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 확인서 등

※ 상기 모든 증명서류는 금회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접수장소에서는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 가능합니다.

※ 공급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공급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니 반드시 "주민등록번호", "세대주 성명 및 관계", "주소변동이력"이 표기되도록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합니다.

※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시 : 26.02.27.(금) 10:00~16:00

- 계약 체결 시 구비 서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함)

구분	해당서류	비고
공통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인감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서명으로 대체 가능
	인감증명서 또는 서명사실확인서	아파트 계약용 (본인발급분에 한함)
	주민등록표등본	전체 내역 포함하여 발급
	계약금 입금 영수증	계약금 현장수납 불가
제3자 대리 계약 시 (본인 외 모두 대리인으로 간주)	공통서류	상기 공통서류 일체를 계약자 본인이 발급하여 대리인이 제출
	계약자의 인감도장	인감도장 날인 및 대조용
	계약자의 인감증명서	아파트 계약위임용 (계약자 본인발급분에 한함)
	위임장	계약자의 인감도장 및 대리인 도장 날인(서명)
	대리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체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 : 추후 안내 예정

- 계약 체결 시 구비서류 : 상기 당첨자 계약 체결 구비 서류 참조

- 예비입주자 동·호 배정 및 계약 체결 일시는 현장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주택형의 계약 현황 및 예비입주자 계약 진행에 따라 예비입주자 선정이 진행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 시 현금 수납은 불가하며, 계약금을 즉시 이체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1일 이체 한도 확인).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검색대상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				
주택의 범위	건물등기사항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등				
주택처분 기준일	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2의2. 분양권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 2의3. 제2조제7호다목에 따른 분양권등의 매매계약서 가. 분양권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나. 분양권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보는 경우	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본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3.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5.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6.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함) 9.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해당 목에서 정하는 주거전용면적 및 가격 요건을 갖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나목3)에 해당하지 않는 것: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1억원(수도권은 1억6천만원) 이하일 것 나. 다음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서 별표 1 제1호가목2)에 따른 가격이 3억원(수도권은 5억원) 이하일 것 1)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2)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으로서 3)에 해당하지 않는 것 3)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따른 주택 또는 분양권등				
	조항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유형	주거전용면적	수도권	비수도권
	제53조제9호가목	아파트(도시형 생활주택 제외)	60㎡ 이하	1억 6천만원	1억원
	제53조제9호나목	단독주택	85㎡ 이하	5억원	3억원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10.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 11.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돌려받지 못한 사람이 임차주택을 경매 또는 공매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그 주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함 가. 주택가격이 1억5천만원(수도권은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이 경우 주택가격의 산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별표1 제1호가목2)를 준용함)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12.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일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

■ 참고사항

- 본 주택은 사용검사가 완료된 아파트로 단지여건, 세대 내부 상태, 마감재 등을 반드시 본인이 주택 개방일에 현장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신청 전에 본 주택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열람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접수일시 경과 후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 자격검증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납하지 않고 일정기간 보관 후 폐기합니다.
- 정해진 기간 내 계약하지 않은 경우(계약금 납부 및 계약서 작성 등) 당첨포기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납부금액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일정기간 이후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본 무순위 입주자모집공고는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청약으로 청약 당첨(예비입주자 선정 포함)시 당첨자로 명단관리 되지 않아 재당첨 제한 등 제한을 받지 않으나,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의거 본 아파트의 무순위 입주자로 선정되어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향후 청약시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하자보수는 「공동주택 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적용되며, 하자보수 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공사에 대하여 계약자(당첨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일체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고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

구분	사업주체	시공업체
상호명	인본개발 주식회사	한신공영(주)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로 94,1층 일부(잠원동, 한신빌딩)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백암면 덕평로 82
법인등록번호	110111-4269563	110111-0075683

■ 본 무순위(사후) 입주자모집공고문 상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본 주택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당사 홈페이지(<http://www.hs-thehue.com>)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고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사업주체로 문의 바랍니다.(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분양 문의 : 02-3393-3320 (통화량이 많아 전화 연결이 어려울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